

의안번호	2204232
의 퇴 인	황명선 의원
회 답 일	2024. 12. 18.
추 계 번호	24A3996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400만원(연평균 3,3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5조)	9	9	9	9	9	45	9
피해지역지원계획 수립 (안 제7조)	48	8	8	48	8	119	24
합 계	57	17	17	57	17	164	33

주: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 피해지역(제2조제3호):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제9조1)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의무규정
2	안 제5조 (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원위원회를 설치(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①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③「전기사업법」 2)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대표, ④피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에너지 전환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제3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제6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 (피해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9조제3항 (피해지역의 선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피해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제1항) 특별회계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운용(제2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³⁾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 ②정부 출연금, ③차입금 등으로 함(제3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①대체 산업 육성,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석탄발전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지원 등 고용안정 및 촉진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제4항)	의무규정
7	안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2조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⁴⁾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안 제9조(피해지역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석탄발전소 폐지가 완료 또는 예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석탄폐지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인구의 현저한 감소 또는 주거환경의 악화가 현저한 지역
2. 석탄발전소 폐지 전 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
3. 해당 지역 내 사업체의 생산,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거나 예상되는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 (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	—
3	안 제7조 (피해지역지원계획의 수립)	○	—
4	안 제8조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나 시행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비 등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비용은 중앙행정기관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재 각 부처가 시행계획에 담을 내용과 사업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소요 비용의 산출이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5	안 제9조제3항 (피해지역의 선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발전소 폐지가 완료 또는 예정된 지역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석탄 폐지 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의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간 임차료, 여비 및 자료 준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지출 등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설명회 또는 토론회 개최 비용은 피해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수와 회의 개최 횟수, 규모 및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전력수급기본 계획 등에 따라 폐지 및 전환 계획이 발표된 석탄화력 발전소의 소재 지역은 각각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를 참고 *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0조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해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청남도의 사례를 보면 제정안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유사한 취지에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의 직무전환과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관련 사업 예산(도비)은 총 39억 2,600 만원임 * [참고자료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관련 사업 현황
7	안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이를 통해 징수하는 대부료·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여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을 위해 제공할 재산의 종류와 해당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수입 등을 알 수 없어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8	안 제12조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국가가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이 확대되어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대상이 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및 인상 이후의 국고보조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기존 사업이 없어 사업량 및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국가사업 중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발 지원사업은 없음. 다만,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지원 사업이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자료4]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7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제1항⁵⁾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안 제7조제1항⁶⁾에 따라 피해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9명, 회의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⁷⁾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5조제2항⁸⁾에 따른 최대 정수인 25명으로 가정
 - － 총 25명 중 제정안⁹⁾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위원(당연직 및 공무원 위원 등)은

5) 안 제5조(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안 제7조(피해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8) 안 제5조(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9) 안 제5조(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에너지 전환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되,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5. 피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위원장인 국무총리(1명), ②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4명), ③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11명)을 합한 16명으로 가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위원(위촉직 및 민간 위원 등)은 총 25명에서 위 16명을 제외한 9명으로 가정

*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은 현재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7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7명)과 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4명)로 가정¹⁰⁾

－ 회의 횟수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을 고려하여 연 4회로 가정¹¹⁾

* 안 제6조¹²⁾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피해지역지원계획 및 피해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위원회의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조제6항¹³⁾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경우 설치 개수 및 위원회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10) 인천광역시(시장, 옹진군수), 충청남도(도지사, 당진시장, 보령시장, 태안군수), 경상남도(도지사, 사천시장, 하동군수), 강원도(도지사, 동해시장)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문위원회 운영 사례

위원회명	설치목적	기능	회의 개최실적(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지원금 결정 및 배분, 지원사업 결산 및 평가 등 심의	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사업자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

주: 회의 개최실적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3.8.

12)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피해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피해지역과 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안 제7조(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안 제7조) 피해지역지원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와, 수립된 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현장컨설팅 및 시행자 대상 집합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와 컨설팅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¹⁴⁾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정안에 따른 피해지역지원계획*과 그 취지가 유사하므로 해당 사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함

* 안 제10조제4항¹⁵⁾에 따라 볼 때 피해지역지원계획은 대체산업 육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소요 비용이 없으며 2024년에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 현장컨설팅 자문료 225만원, 지원사업 시행자 대상 집합교육비 554만원 등 총 4,779만원이 소요

－ 2023년의 소요 비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변화 및 지원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 외 자문료 및 교육비는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15) 안 제10조(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 산업 육성,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석탄발전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지원 등 고용안정 및 촉진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피해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표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소요 비용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산출 근거	소요 금액
2023년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 확대 연구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40,000천원/5개월)	40,000
	‘2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장컨설팅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 자문료 2,250천원 (750천원/1日 × 3日)	2,250
	‘2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 대상 집합교육	다과비 3,603천원 교육자료 인쇄비 1,936천원	5,539
합계			47,78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법안 심의 및 공포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수당 지급 대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500만원(연평균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9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900만원

[표 3]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5조)	9	9	9	9	9	45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피해지역지원계획 수립(안 제7조)

- 피해지역지원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된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6년·2029년에 각 4,800만원, 2027·2028·2030년에 각 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1,900만원(연평균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연구용역비의 경우 법률 시행 연도(2026년)를 포함하여 3년마다 소요되고, 그 외의 비용은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표 4] 피해지역지원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피해지역지원계획 수립 (안 제7조)	48	8	8	48	8	119	24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 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 위원회 설치·운영 및 피해지역지원계획 수립 비용은 각각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현재 수립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단위: 용량(MW), 발전량(GWh)]

발전소명(지역)	대수	용량	호기	용량	준공	호기	용량	준공	발전량('23)
삼천포화력(경남)	4	2,120	#3	560	'93	#5	500	'97	11,278
			#4	560	'94	#6	500	'98	
영흥화력(인천)	6	5,080	#1	800	'04	#4	870	'08	22,174
			#2	800	'04	#5	870	'14	
			#3	870	'08	#6	870	'14	
여수화력(전남)	2	669	#1	340	'16	#2	329	'11	3,193
보령화력(충남)	6	3,050	#3	550	'93	#6	500	'94	15,990
			#4	500	'93	#7	500	'08	
			#5	500	'93	#8	500	'08	
신보령화력(충남)	2	2,038	#1	1,019	'17	#2	1,019	'17	11,704
태안화력(충남)	10	6,100	#1	500	'95	#6	500	'02	28,163
			#2	500	'95	#7	500	'07	
			#3	500	'97	#8	500	'07	
			#4	500	'97	#9	1,050	'16	
			#5	500	'01	#10	1,050	'17	
하동화력(경남)	8	4,000	#1	500	'97	#5	500	'00	16,889
			#2	500	'97	#6	500	'01	
			#3	500	'98	#7	500	'05	
			#4	500	'99	#8	500	'05	
삼척그린화력(강원)	2	2,044	#1	1,022	'16	#2	1,022	'17	8,867
당진화력(충남)	10	6,040	#1	500	'99	#6	500	'06	27,197
			#2	500	'99	#7	500	'07	
			#3	500	'00	#8	500	'07	
			#4	500	'01	#9	1,020	'16	
			#5	500	'05	#10	1,020	'16	
북평화력(강원)	2	1,190	#1	595	'17	#2	595	'17	6,067
고성(경남)	2	2,080	#1	1,040	'21	#2	1,040	'21	12,247
신서천(충남)	1	1,018	#1	1,018	'21				3,523
강릉안인(강원)	2	2,080	#1	1,040	'22	#2	1,040	'23	9,985
반월열병합*(경기)	1	83	#1	83	'90				368
대구염색열병합*(대구)	1	73	#1	73	'04				0.7
SGC에너지*(전북)	1	114	#1	114	'08				1,962
새만금열병합*(전북)	2	303	#1	152	'15	#2	152	'15	2,376
금호여수열병합*(전남)	2	264	#1	119	'09	#2	145	'16	1,661
여수열병합*(전남)	1	48	#1	48	'10				358
구미열병합*(경북)	1	97	#1	97	'91				535
부산염색열병합*(부산)	1	19	#1	19	'93				16
김천열병합*(경북)	1	59	#1	59	'13				393
전북집단지너지*(전북)	1	19	#1	21	'92				106
상공에너지*(전북)	1	10	#1	10	'12				40
포천그린에너지*(경기)	1	170	#1	170	'18				1,338
동해화력(무)(강원)	2	400	#1	200	'98	#2	200	'99	1,876
삼척화력(강원)	1	1,050	#1	1,050	'24				-

주: *는 비중양급전(14대/1,259.2MW), (무)는 무연탄(2대/400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단위: MW)

연도	전환 계획			
	발전설비	내용	이전 지역	설비용량
2025	태안#1	LNG 전환	구미	500
	태안#2	LNG 전환	여수	500
2026	하동#1	LNG 전환	안동	500
	보령#5	LNG 전환	보령	500
	보령#6	LNG 전환	함안	500
	삼천포#3,4	LNG 전환	(미정)	1,120
2027	하동#2,3	LNG 전환	하동	1,000
	삼천포#5	LNG 전환	(미정)	500
2028	하동#4	LNG 전환	하동	500
	삼천포#6	LNG 전환	(미정)	500
	태안#3	LNG 전환	공주	400
2029	동해#1,2	LNG 전환	미정	400
	당진#1,2	LNG 전환	(호남)	1,000
	태안#4	LNG 전환	(미정)	500
2030	당진#3,4	LNG 전환	용인	1,000
2031	하동#5,6	LNG 전환	용인	1,000
2032	태안#5,6	LNG 전환	용인	1,000
2033	—	—	—	—
2034	영흥#1,2	LNG 전환	(미정)	1,600
2035	—	—	—	—
2036	당진#5,6	LNG 전환	(미정)	1,000

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첨단산업 전력공급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시군	사업명	사업 개요	2024년도 예산(도비)
1	보령	보령 수소차 특별보급 사업	수소차 구입자 500만원 추가 지원(50대)	250
2	보령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지역연계 육성계획 수립	보령1·2호기 석탄화력 폐지 영향분석 등 연구용역	200
3	보령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기업·연구·행정 간 협력 비즈니스 및 창업·교육 지원 공간 마련	1,428
4	보령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전문 활동가 양성	120
5	당진	친환경 버스정류소 표지판 구축	노후 표지판 태양광 LED 교체	594
6	태안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	노르딕워킹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345
7	태안	해상풍력단지 환경영향조사	풍력단지 해양환경영향 조사 및 이익 공유모델개발	699
8	태안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직무역량교육, 직무전환 지원	150
9	태안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사업	친환경 제품 지원, 에너지 고효율 시설 교체 등	140
합계				3,926

자료: 충청남도

[참고자료 4]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번	발전원	발전소	시·도	지원금(2024 예산 기준)
기본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태안발전본부	충남	4,986
	2	석탄(유연탄)	당진화력본부	충남	4,749
	3	석탄(유연탄)	영흥화력본부	인천	4,301
	4	석탄(유연탄)	하동화력본부	경남	3,832
	5	석탄(유연탄)	보령화력본부	충남	2,717
	6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2,162
	7	석탄(유연탄)	신보령화력발전소	충남	2,113
	8	석탄(유연탄)	삼천포화력본부	경남	1,934
	9	석탄(유연탄)	삼척발전본부	강원	1,873
	10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1,771
	11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738
	12	석탄(유연탄)	북평화력발전소	강원	1,265
	13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793
	14	석탄(유연탄)	여수화력발전처	전남	522
	15	석탄(유연탄)	SGC에너지	전북	487
	16	석탄(유연탄)	OCI SE 새만금열병합발전	전북	378
	17	석탄(유연탄)	GS포천그린에너지	경기	213
	18	석탄(유연탄)	구미발전소	경북	103
	19	석탄(유연탄)	반월발전소	경기	67
	20	석탄(유연탄)	김천열병합발전소	경북	54
	21	석탄(유연탄)	부산염색열병합	부산	30
	22	석탄(유연탄)	전북집단에너지	전북	30
	23	석탄(무연탄)	동해화력발전처	강원	503
소계					36,621
특별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17,031
	2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3,000
	3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3,916
	4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70
소계					34,017
합계					70,638

주: 1. 시·도 구분은 발전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¹⁶⁾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함(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기본지원사업(5451-301): 운영중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추정)발전량에 발전원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2024년 예산 기준 총 6개 발전원, 775개 발전소)
- 특별지원사업(5451-302): 건설중 또는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 내 지원(2024년 예산 기준 총 56개 발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